

투 자 설 명 서

CJ 차이나 인프라-컨슈머 주식형 자투자신탁1호

이 투자설명서는 CJ 차이나 인프라-컨슈머 주식형 자투자신탁1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CJ 차이나 인프라-컨슈머 주식형 자투자신탁1호 수익증권을 매입하기 전에 반드시 이 투자설명서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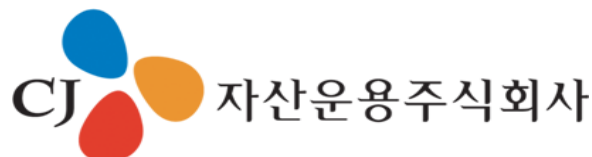
1. 투 자 신 탁 명 CJ 차이나 인프라-컨슈머 주식형 자투자신탁1호
2. 자 산 운 용 회 사 명 CJ자산운용(주)
3. 판 매 회 사 명 및 CJ투자증권
상담가능전화번호 T. 1588-7171

※ 판매회사는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판매업무만을 영위할 뿐 투자신탁재산의 운용과는 무관하며, 투자자의 이익을 보장하거나 손실을 보전하지 않습니다.

4. 작 성 기 준 일 2007년 9월 3일

5. 투 자 설 명 서 판매회사
비치 · 공시장소 및 자산운용회사(www.cjfund.com)
인 터 넷 게 시 주 소 자산운용협회 홈페이지 (www.amak.or.kr)

금융감독위원회는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발행을 승인하거나 투자설명서 내용의 정확성 및 적정성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또한 투자신탁 수익증권은 「예금자보호법」에 의한 보호를 받지 않는 실적배당 상품으로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투자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약(핵심설명서)

<p>I. 투자신탁의 개요</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명칭 2. 신탁계약기간 3. 분류 4. 자산운용회사 	<p>II. 투자정보</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투자 목적 2. 주요 투자전략 3. 주요 투자위험 4. 투자위험에 적합한 투자자 유형 5. 기준가격 6. 운용전문인력 7. 투자실적 	<p>III. 매입·환매 관련정보</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수수료 및 보수 2. 과세 3. 매입·환매 절차 등
---	--	--

제 1 부 투자신탁의 기본정보

- I. 투자신탁의 개요
 1. 명칭
 2. 신탁계약기간
 3. 분류
 4. 자산운용회사
 5. 최초 설정일 등 연혁
 6. 수탁고 추이
 7. 해지사유
- II. 투자정보
 1. 투자 목적
 2. 주요 투자전략
 3. 주요 투자위험
 4. 투자위험에 적합한 투자자 유형
 5. 기준가격의 산정 및 공시
 6. 운용전문인력
 7. 투자실적
- III. 수수료·보수, 과세
 1. 수익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수수료
 2. 투자신탁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3. 투자소득에 대한 과세
- IV. 매입·환매 및 분배
 1. 매입
 2. 환매
 3. 이익 등의 분배

제 2 부 투자신탁의 상세 정보

- I. 투자전략 및 투자위험 등
 1. 투자 전략
 2. 투자 위험
 3. 투자 대상
 4. 투자 제한
- II. 자산의 평가
- III. 투자증권, 장내파생상품 거래시 중개회사의 선정기준
- IV. 매입·환매 및 분배관련 유의사항
 1. 매입관련 유의사항
 2. 환매관련 유의사항
 3. 분배관련 유의사항

제 3 부 자산운용회사 및 투자신탁의 관계인에 관한 사항

- I. 자산운용회사
 1. 회사의 개요
 2. 주요 업무
 3. 최근 2개 사업연도의 요약 재무내용
 4. 운용자산 규모
 5.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 II. 판매회사
 1. 회사의 개요
 2. 주요 업무
- III. 수탁회사
 1. 회사의 개요
 2. 주요 업무
- IV. 일반사무관리회사
 1. 회사의 개요
 2. 주요업무
- V. 채권평가회사
 1. 회사의 개요
 2. 주요 업무

제 4 부 수익자의 권리 및 공시에 관한 사항

- I. 수익자의 권리
 1. 수익자총회 및 의결권
 2. 잔여재산분배
 3. 장부·서류의 열람 및 등·초본 교부 청구권
 4. 손해배상책임
 5. 재판관할
 6. 기타 수익자의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
- II. 공시
 1. 정기공시 및 보고서
 2. 수시공시



이 설명서는 금융소비자의 권익 보호 및 금융상품에 대한 이해 증진을 위해 상품의 핵심내용을 알기 쉽게 작성한 것입니다. 상품내용을 충분히 이해하신 다음에 계약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요약(핵심설명서)

I 투자신탁의 개요

1. 명 칭 : CJ 차이나 인프라-컨슈머 주식형 자투자신탁1호
2. 신탁계약기간 : 투자신탁의 최초 설정일부터 신탁계약의 해지일까지
3. 분 류 : 주식형, 추가형, 개방형, 종류형, 모자형 투자신탁의 자투자신탁
4. 자산운용회사 : CJ자산운용(주)
외화자산의 운용은 **INVESCO Hong Kong Limited**에 위탁 운용

II 투자정보

구 분	주 요 내 용
1. 투자목적	투자신탁재산의 중국관련 주식 중 사회기반시설 및 소비재 관련 주식에 집중 투자하여 높은 수익을 추구하는 CJ 차이나 인프라-컨슈머 주식형 모 투자신탁에 투자하여 적극적인 자본 이득을 추구
2. 주요 투자전략	CJ 차이나 인프라-컨슈머 주식형 모 펀드에 100% 이하를 투자하며 모 펀드는 중국의 인프라 및 소비재 관련 주식에 집중투자 하며, 수익률 성장이 기대되는 종목에 동일비중으로 투자하여, 시장대비 초과수익을 추구 환율변동 위험에 대해서는 원화와 홍콩 및 미국 달러에 대해서만 환 헤지를 수행 하며 개별통화(중국 위안화 등)에 대해서는 헤지 전략을 수행하지 않음
3. 주요 투자위험	'예금자보호법'의 보호를 받지않는 상품으로 중국관련 주식의 가격변동 및 환율 변동 등에 따른 투자손실이 발생할 수 있음
4. 투자위험에 적합한 투자자 유형	이 투자신탁의 투자위험은 5등급 중 2등급으로 매우 높음 따라서 중국관련 주식등에의 투자를 통한 높은 투자 수익을 추구하고 높은 투자 위험을 감내할 수 있는 장기 투자자에게 적합한 상품
5. 기준가격	수익증권의 매입 또는 환매 시 적용되는 가격으로 투자신탁의 순자산 가치를 발행 수익증권 총수로 나누어 매일 산출하며 기준가격은 판매회사의 영업점 또는 자산운용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www.cjfund.com)에서 확인 가능

6. 운용전문인력

성명	나이	직위	운용현황		주요 운용경력 및 이력
			운용중인 다른 간접투자기구 수	다른 운용자산규모	
진 성남	43세	팀장	10개	16,144억	현 CJ자산운용 글로벌 운용팀장 제일투자신탁 국제부

※ 이 투자신탁의 운용은 글로벌운용팀에서 운용하며 상기인은 이 투자신탁의 책임운용전문인력(팀장)입니다.

7. 투자실적 : 신규설정펀드로 해당사항 없음

III 매입·환매관련 정보

1. 수수료 및 보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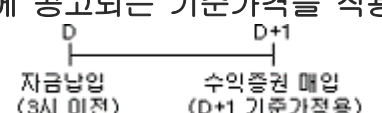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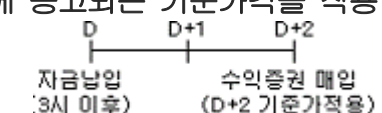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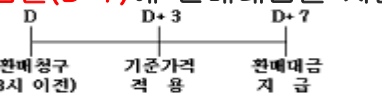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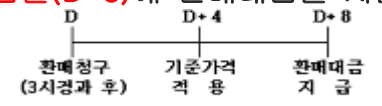
구 분		지급비율(연간, %)					지급시기	
		종류 A	종류 CE	종류 C1	종류 C2	종류 C3		
수익증권 판매 기준		제한 없음	온라인판매	제한 없음	50억 이상	간접투자 기구 등		
수익자에게 직접 부과 되는 수수료	선취판매수수료 ¹⁾	납입금액의 1%	-	-	-		납입 시	
	환매수수료 ¹⁾	1. 30일 미만 : 이익금의 70% 2. 30일 이상 90일 미만 : 이익금의 30%					환매 시	
투자신탁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보수	운용회사보수	0.95	0.95	0.95	0.95	0.95	매3개월
		판매회사보수	0.95	0.95	1.95	0.95	0.03	
		수탁회사보수	0.06	0.06	0.06	0.06	0.06	
		사무관리보수	0.025	0.025	0.025	0.025	0.025	
		보수합계	1.985	1.985	2.985	1.985	1.065	
	기타비용	0.115	0.115	0.115	0.115	0.115	발생 시	
총보수·비용 ²⁾		2.1	2.1	3.1	2.1	1.18		

주 1) 선취판매수수료는 매입시점에서 환매수수료는 환매 시 일회적으로 부과
 2) 총보수·비용은 투자자가 실질적으로 부담하는 전체적인 보수·비용수준을 나타냄

2. 과세 : 투자자는 투자대상으로부터 발생한 이자, 배당 및 양도차익(주식매매차익 등 제외)에 대하여 소득세 등(작성일 현재 개인 15.4%, 법인 14.0%)을 부담합니다. 외국상장주식의 매매차익 등에 대한 비과세혜택이 2009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됩니다.

3. 매입·환매절차 등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은 판매회사의 영업시간(오전 9시00분~오후4시30분) 중 매입 또는 환매할 수 있습니다.

구 분	오후 3시 이전	오후 3시 이후
매 입	-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D)의 다음 영업일(D+1)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 	-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D)로부터 제3영업일(D+2)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 
환 매	- 환매청구일(D)로부터 제4영업일(D+3)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 - 제8영업일(D+7)에 환매대금을 지급 	- 환매청구일(D)로부터 제5영업일(D+4)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 - 제9영업일(D+8)에 환매대금을 지급 

※ 의문사항 또는 불편사항(민원)이 있는 경우 판매회사의 상담센터(1588-7171)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www.cjcyber.com)를 통해 문의하거나 금융감독원(국번 없이 1332)에 도움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요약(핵심설명서)’은 투자설명서의 주요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투자신탁의 투자목적, 투자위험 등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투자설명서 본문을 읽어보셔야 합니다.

(판매회사)_____ (점포명)_____ (판매직원/취득권유인 직위 및 성명)_____ (은)는 (고객 성명)_____에게 투자설명서를 교부하고 그 주요내용(환율변동 위험 포함)을 설명 하였습니다.

2007.
 판매직원/취득권유인 _____ 서명 또는 (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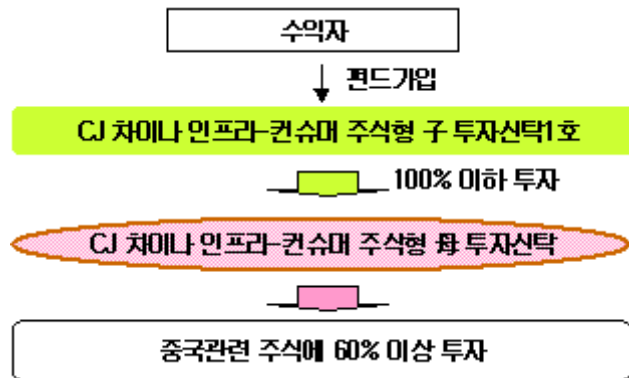
1. 투자신탁의 개요

- 1. 명칭 CJ 차이나 인프라-컨슈머 주식형 자투자신탁1호
- 2. 신탁계약기간 투자신탁의 최초설정일부터 신탁계약의 해지일까지
- 3. 분류 증권투자신탁(주식형), 추가형, 모자형 투자신탁의 자투자신탁

*** 종류별 가입기준**

- 종류 A 제한 없음
- 종류 CE 판매회사의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가입한 자
- 종류 C1 제한 없음
- 종류 C2 납입금액 50억 이상,
- 종류 C3 법에 의한 간접투자기구
 납입금액 100억원 이상 개인, 500억원 이상 법인
 법인세법 시행령에 따른 기관투자가 및 국가재정법에 따른 기금

- 투자신탁의 구조



- 4. 자산운용회사 CJ자산운용(주)
※ 해외위탁 자산운용회사 : 인베스코 홍콩 리미티드(INVESCO Hong Kong Limited)

- 5. 최초설정일 등 연혁 2007년 월 일
 - 종류 A 수익증권 : 2007년 월 일 설정
 - 종류 CE 수익증권 : 2007년 월 일 설정
 - 종류 C1 수익증권 : 2007년 월 일 설정
 - 종류 C2 수익증권 : 2007년 월 일 설정
 - 종류 C3 수익증권 : 2007년 월 일 설정

- 6. 수탁고 추이 해당사항 없음

- 7. 해지사유
 - 투자신탁의 해지
 - 자산운용회사는 금융감독원장의 승인을 얻어 이 투자신탁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장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이 투자신탁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1. 수익자 전원이 동의한 경우
 - 2. 1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100억원에 미달하는 경우
 - 3. 수익증권 전부의 환매청구가 있는 경우

II. 투자정보

1. 투자목적

이 투자신탁은 중국관련 주식 중 인프라(사회기반시설) 및 컨슈머(소비재) 관련기업의 주식에 주로 투자하는 주식형 母 펀드에 주로 투자하는 주식형 子 투자신탁으로 적극적인 자본이득을 추구하는 주식형 子 투자신탁입니다.

그러나, 이 투자신탁의 투자목적이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참고>

母 투자신탁의 투자목적

투자신탁의 투자 대상인 母 투자신탁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CJ 차이나 인프라-컨슈머 주식형 母 투자신탁

이 투자신탁은 약관상 신탁재산의 60%이상을 중국관련 해외주식에 투자하고, 국내 및 해외채권 등에 40%이하, 어음(A2-이상) 등에 40%이하로 투자하는 주식형 母 투자신탁입니다.

실제 운용 시에는 신탁재산의 약 90% 수준을 해외자산에 투자할 예정이며 해외 투자부분의 70% 이상을 중국관련 주식 중 인프라(사회기반시설) 및 컨슈머(소비재) 관련 기업의 주식에 투자함으로써 높은 자본이익을 추구합니다. 또한 이 투자신탁의 해외자산 운용에 관한 사항은 세계적 투자 운용회사 인 인베스코 홍콩리미티드(INVESCO Hong Kong Limited)에 위탁 운용합니다.

2. 주요투자전략

이 투자신탁은 모자형 투자신탁의 子 투자신탁으로 주식형 母 투자신탁에 신탁재산의 100% 이하를 투자합니다.

<참고>

母 투자신탁의 주요 투자전략

■ CJ 차이나 인프라-컨슈머 주식형 모투자신탁

■ 주식에의 투자

주식에의 투자는 주로 중국관련 주식 중 Infra(사회기반시설) 및 컨슈머(소비재) 관련 섹터에 중점 투자할 예정입니다.

중국관련 주식은 중국본토의 A주식, B주식 및 중국에 본사를 둔 기업이 홍콩에 상장되어있는 홍콩 H주식 및 중국의 국영기업이 홍콩에 상장되어 있는 홍콩 R(레드 칩)주식 및 홍콩에 상장된 기타 중국관련 기업의 주식에 모두 투자할 예정입니다.

인프라 관련주식은 도로, 철도, 항만, 발전소, 상하수도, 대중교통시설 등 사회기반시설과 관련된 자본재, 원자재, 설비투자, 운송, 에너지분야의 기업을 의미하며, 컨슈머 관련 주식은 자동차, 내구소비재, 의류, 호텔, 레저산업, 미디어, 소매 등의 경기관련소비재 및 음식료, 담배 등의 비 경기관련소비재를 모두 포함합니다.

■ 채권에의 투자

채권에는 국내 및 해외채권에 40%이하, 어음(A2-이상) 등에 40%이하로 투자 하며 투자자의 환매요청에 원활한 대응을 위한 유동성 관리의 목적으로 운용할 예정입니다.

또한 해외투자자금의 일부를 투자대기자금의 성격으로 해외 채권 및 해외 채권형 펀드 등에 투자할 수도 있습니다.

■ 기타 간접투자증권 및 장외파생상품에의 투자

중국 A주식에의 투자에 있어 적정 투자대상이 없거나 투자비율을 조절하기 위하여 중국 A주식에 주로 투자하는 해외간접투자증권에 직접 투자하거나 해외간접투자증권 또는 중국 A시장의 개별주식의 성과와 연계된 장외파생상품에도 투자(신탁재산의 10% 이내, 장외파생상품의 투자로 인한 최대 손실 규모는 장외파생상품 투자금액 이내인 구조)할 예정입니다.

■ 환 헤지 전략

홍콩 및 미국 달러화와 한국 원화 간 환율변동위험을 최소화 시키기 위해 통화선물 등을 사용하여 환 위험을 제거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홍콩 및 미국 달러 이외의 개별 국가 통화는 환 헤지 전략을 수행하지 않을 예정이므로 개별국가의 환율변동 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 투자전략에 대한 상세한 내용이 '제2부. 투자신탁의 상세정보'의 '1. 투자 전략 및 투자위험' 중 '1. 투자전략(11-12쪽)에 설명되어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십시오.

3. 주요투자위험

이 투자신탁은 해외 주식형 母 투자신탁에 100% 이하 투자하므로 이 투자신탁은 해외 주식형 투자신탁이 부담하는 위험수준과 유사합니다.

<참고>

母 투자신탁의 주요 투자위험

(1) 시장위험

이 투자신탁은 중국관련 주식 등에 주로 투자하며 중국관련 주식 등은 국내 거시경제지표의 변화보다는 해외 특히 중국 금융시장의 주가, 환율, 금리 등의 거시경제지표의 변화에 더 민감하게 변동됩니다.

(2) 투자대상 국가위험

또한 이 투자신탁의 성과는 중국관련 주식 등의 가격변동에 따라 결정되므로 투자유가증권의 가치에 부정적으로 작용하는 관련 증권시장의 법령 및 규제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노출될 수 있으며 중국과 같은 신흥시장의 경우 글로벌 시장 또는 선진국가의 시장에 투자하는 것에 비해 상대적으로 취약한 경제구조, 낮은 투명성 등으로 더 큰 투자 위험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2) 주가하락위험

이 투자신탁은 주식 고 편입상품으로 중국관련 주식의 주가하락(전체 주식 시장의 변동 또는 개별기업의 실적 변화 등으로 인한 개별 기업의 주가 변동)에 따르는 위험을 부담합니다.

또한 이 투자신탁은 인프라 및 컨슈머 섹터에 집중 투자하므로 여러 섹터에 분산하여 투자하는 펀드에 비해 더 높은 위험을 부담합니다.

(3) 환율변동위험

이 투자신탁은 해외투자로 인한 환 위험에 대해 원화와 홍콩달러 및 미국 달러에 대해서 통화선물 등을 통한 환 위험 제거를 추구하나 **기타 다른 통화에 대하여는 환 헤지 전략을 수행하지 않을 예정이므로 다른 통화의 환율변동에 따라 투자신탁의 가치변동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그 밖에 유동성 위험, 채권(해외채권 포함) 투자위험, 환매연기 및 제한 위험, 파생상품투자에 따르는 위험 등을 부담 합니다.

※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 등에서 판매하는 경우에도 당해 투자 신탁수익증권은 예금과 달리 예금보험공사 등의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 투자위험에 대한 상세한 내용이 ‘제2부. 투자신탁의 상세정보’의 ‘1. 투자전략 및 투자위험’ 중 ‘2. 투자위험(12~13 쪽)에 기재되어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십시오.

4. 투자위험에 적합한 투자자 유형

이 투자신탁은 신탁재산의 대부분을 중국관련 주식 등에 주로 투자하는 주식형 모 투자신탁에 투자하여 장기적인 자본 차익을 추구하는 상품으로 중국관련 주식의 주가 등에 따른 변화에 민감하게 변동 되므로 **5등급 중 2등급에 해당되는 높은 수준의 투자위험을 지니고 있습니다.**

따라서 중국관련 주식투자에 따르는 위험을 충분히 이해하고, 원금손실 위험을 감수하면서 중국관련 주식등에의 투자를 통한 적극적인 자본이득을 추구하는 투자자에게 적합한 상품입니다.

※ 투자위험에 관한 사항

투자위험은 투자대상의 변동성 및 유동성, 분산투자의 정도, 투자기간 등을 고려 하여 다음과 같이 분류합니다.

- 1등급(매우 높은 위험) : 신탁재산의 대부분을 ①특정 종목 또는 섹터, 국가, 지역 등에 집중되어 있으며, ②신용위험 및 시장위험으로 인한 가격 변동성이 매우 크며 ③유동성이 작아 투자자산의 처분 등이 용이하지 못한 투자대상에 투자하여 투자대상 자산의 가치 하락 시 급격하고 집중적인 신탁재산의 가치 하락이 예상 되는 투자신탁

- 2등급(높은 위험) : 신탁재산의 대부분을 ①신용위험 및 시장위험으로 인한 가격 변동성이 매우 큰 투자대상에 투자하나, ②투자대상이 다양한 종목, 지역, 국가 등으로 분산되어 있고, ③유동성이 커 투자자산의 처분 등이 용이한 투자대상에 투자하여 투자대상 자산의 가치 하락 시 일정정도의 가치하락은 불가피 하나 급격한 신탁재산의 가치 하락을 회피할 수 있는 투자신탁

- 3등급(중간위험) : 신탁재산을 주식, 통화, 파생상품, 투자적격 이외의 채권 등 과 같은 신용위험 및 시장위험이 높은 투자대상을 포함하고 있으며, 분산 투자와 유동성을 갖춘 투자신탁

- 4등급(낮은 위험) : 신탁재산의 대부분을 국채, 회사채 등과 같은 신용위험 및 시장위험이 낮은 투자대상에 투자하며, 분산투자과 유동성을 갖춘 투자 신탁. 단 금리변동 및 환율변동에 따른 추가위험이 있을 수 있음.

- 5등급(매우 낮은 위험) : 신탁재산을 현금, 국채, A- 등급 이상의 우량 회사채 등에 투자하여 신용위험 및 시장위험을 최소화하고, 분산투자과 유동성을 갖춘 투자신탁. 단 금리변동에 따른 추가위험이 있을 수 있음.

5. 기준가격의 산정 및 공시

구 분	주요 내용
기준가격 산정방법	당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기준 가격]은 그 직전일의 대차대조표상에 계상된 투자신탁 [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상당액]의 자산총액에서 부채 총액을 차감한 금액(이하 "순자산총액[당해 종류 수익 증권]의 순자산총액)" 이라 한다)을 직전일의 수익증권 [당해 종류 수익증권] 총좌수로 나누어 산출하며, 1000좌 단위로 원 미만 셋째 자리에서 4사5입하여 원 미만 둘째 자리까지 계산합니다.
기준가격 산정주기	매일 산정합니다.
기준가격 공시시기	매일 공고·게시합니다.
기준가격 공시방법 및 장소	판매회사 영업점에 공고·게시 또는 자산운용회사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합니다.(www.cjfund.com)

- ※ 이 투자신탁은 법 제 138조의 규정에 의한 종류형 투자신탁으로서 수익자의 특성에 알맞게 기준가격이 서로 다른 수종의 수익증권을 발행하는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 ※ 이 투자신탁은 종류형 투자신탁으로서 투자신탁 보수 및 투자신탁 설정일 등의 차이로 종류별 기준가격이 서로 다르게 산출됩니다.
- ※ 이 투자신탁이 투자한 母 투자신탁의 기준가격은 이 투자신탁의 기준가격 산정방식과 동일하게 결정되며 이 투자신탁의 기준가격과 함께 母 투자 신탁의 기준가격을 판매회사 영업점 또는 자산운용회사 인터넷 홈페이지 에 게시합니다.

6. 운용전문인력

성명	직위	주요경력 및 이력
진 성 남	팀 장	현 CJ자산운용 글로벌 운용팀장 제일투자신탁 국제부

- ※ 이 투자신탁은 글로벌운용팀에서 운용하며 상기 인은 이 투자신탁의 책임 운용전문인력이며, 현재 운용중인 다른 간접투자 기구의 수와 운용자산 규모 등에 대한 상세한 내용이 '제3부. 자산운용회사 및 투자신탁의 관계인에 관한 사항'의 '1. 자산운용회사' 중 '5.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24쪽)에 설명 되어 있음

7. 투자실적

해당사항 없음

III. 수수료·보수, 과세

이 투자신탁은 법 제 138조의 규정에 의한 종류형 투자신탁으로서 수익자의 특성에 알맞게 기준가격 이 서로 다른 수종의 수익증권을 발행하는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수익증권의 종류 및 가입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가. 종류 A : 제한 없음
- 나. 종류 CE : 판매회사의 온라인 시스템을 통하여 가입한 자
- 다. 종류 C1 : 제한 없음
- 라. 종류 C2 : 납입금액 50억 이상
- 마. 종류 C3 :
 - 법에 의한 간접투자기구
 - 납입금액 100억원 이상 개인, 500억원 이상 법인 또는
 - 법인세법 시행령에 따른 기관투자가 및 국가재정법에 따른 기금

1. 수익자에게 - 선취 판매수수료
 직접 부과되는 1) 종류 A 수익증권 : 납입금액의 1.0%
 수수료 2) 종류 CE, C1, C2, C3 수익증권 : 없음
- 환매수수료 : 모든 종류의 수익증권에 적용
 1) 30일 미만 환매 시 : 이익금의 70%
 2) 30일 이상 90일미만 환매 시 : 이익금의 30%

2. 투자신탁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구 분	지급비율(연간, %)					지급 시기
	종류 A	종류 CE	종류 C1	종류 C2, CE	종류 C3	
자산운용회사	0.95	0.95	0.95	0.95	0.95	매 3개월
판매회사	0.95	0.95	1.95	0.95	0.03	
수탁회사	0.06	0.06	0.06	0.06	0.06	
사무관리회사	0.025	0.025	0.025	0.025	0.025	
기타비용 ¹⁾	0.115 수준	0.115 수준	0.115 수준	0.115 수준	0.115 수준	발생 시
총 보수·비용	2.1 수준	2.1 수준	3.1 수준	2.1 수준	1.18 수준	

주1) 기타비용은 이 투자신탁에서 경상적, 반복적으로 지출되는 비용으로서 직전 회계연도의 기타비용 비율 또는 이 투자신탁과 유사한 상품의 기타비용비율 등을 추정치로 사용합니다. (毋 투자신탁의 기타비용 등을 포함합니다)

※ 투자신탁이 부담하는 비용 중 기타비용 이라 함은 투자신탁재산과 관련된 아래 의 비용을 말합니다

1. 투자증권의 매매수수료
2. 투자증권의 예탁 및 결제비용
3. 투자신탁재산의 회계감사비용
4. 수익자명부 관리비용
5. 수익자총회 관련비용
6. 투자신탁재산에 관한 소송비용
7. 투자증권 등의 가격정보비용
8.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에 필요한 지적재산권비용
9. 기타 이에 준하는 비용으로 투자신탁재산의 운용등에 소요되는 비용

<참고>

- 母 투자신탁의 수수료 및 보수에 관한 사항

이 투자신탁의 母 투자신탁은 수익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수수료 및 투자신탁에 부과되는 보수가 없습니다. 다만, 자산운용보고서 작성 및 제공비용을 제외한 투자 신탁재산의 운용비용 등은 이 투자신탁과 마찬가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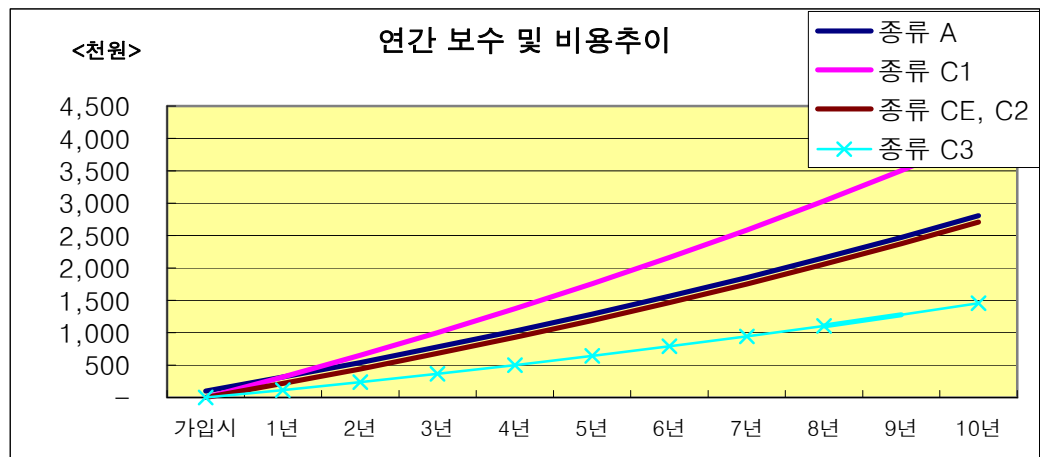
■ CJ 차이나
인프라-컨슈머
주식형 母
투자신탁

구 분	지급비율(연간, %)	지급시기
자산운용회사	없음	매3개월
판매회사	없음	
수탁회사	없음	
사무관리회사	없음	
기타비용	0.1 수준	발생 시
총 보수·비용	0.1 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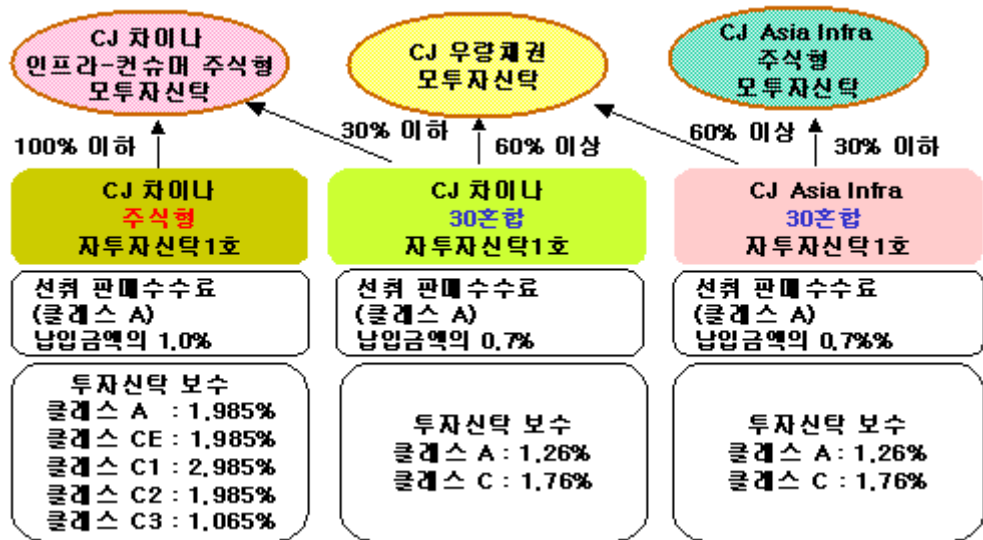
- 1,000만원을 투자할 경우 투자자가 부담하게 되는 수수료 및 보수·비용의 투자기간별 예시

구분	가입 시	1년 후	3년 후	5년 후	10년 후
종류 A	99,000	314,000	778,000	1,288,000	2,806,000
종류 CE	0	215,000	679,000	1,189,000	2,707,000
종류 C1	0	318,000	1,002,000	1,756,000	3,997,000
종류 C2	0	215,000	679,000	1,189,000	2,707,000
종류 C3	0	113,000	355,000	623,000	1,418,000

주) 투자자가 1,000만원을 투자했을 경우 직·간접적으로 부담할 할 것으로 예상되는 보수·비용을 산출한 것임. 이익금은 모두 재투자하며, 연간 투자수익률은 5%, 총 보수·비용비율은 일정하다고 가정하였음. 그러나 실제 투자자가 부담하게 되는 보수 및 비용은 기타비용의 변동, 보수의 인상 또는 인하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참 고>
 다른
 子 투자신탁 간의
 투자신탁 보수
 비교



3. 투자소득에 대한 과세

(1) 투자신탁에 대한 과세

투자신탁에서 납부한 이자소득의 원천징수세액은 다시 환급 받게 되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투자신탁에서는 투자소득에 대해 세금을 납부하지 않습니다.

(2) 수익자에 대한 과세

수익자는 투자신탁이 투자한 투자대상에서 발생한 이자, 배당 및 양도차익에 대하여 소득세 등(작성일 현재 개인 15.4%, 법인 14.0%)을 부담합니다. 다만, 상장주식, 벤처기업 주식 또는 출자지분, 상장 주식을 대상으로 하는 선물 거래에서 발생하는 매매·평가차익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됩니다.

(3) 해외 상장주식 투자에 따른 비과세 안내

2007년 6월 1일 공포된 조세특례제한법에 근거하여 간접투자기구(펀드)에서 투자하는 **외국상장주식의 매매 및 평가손익에 대하여 비과세가 한시적으로 적용**됩니다.

가. 비과세 범위

- 외국상장시장에서 거래되는 외국법인 등이 국외에서 발행한 주식(주식예탁증서포함)의 매매·평가손익에 대해서만 한시적 비과세 인정
- 해외에서 발행 및 유통되는 유추얼 펀드, 리츠, ETF의 지분증권 및 이와 유사한 성격의 특수목적회사(paper company; 해당 국가 법인세 부담이 없는 회사)의 주식 등은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
- 단, 국내 펀드를 통하여 해외주식을 간접적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도 양도차익에 대해 비과세 혜택 부여

나. 적용시한

- **2007년 6월 1일부터 2009년 12월31일까지** 발생한 국외 상장주식에 대한 매매·평가손익에 대해서 적용
- 2007년 6월 1일 이전에 발생한 국외상장주식 매매·평가손익은 과세대상 임

다. 기타 유의사항

펀드전체 소득이 아닌 국외상장주식에 대한 매매·평가손익에 대해서만 비과세가 적용되고 국외상장주식의 배당금 등에 대해서는 과세가 이루어 지기 때문에 **펀드 전체적으로 손실이 발생하여도 과세가 될 수 있음**

※ 상기 세율은 정부의 정책에 따라 향후 변동 될 수 있습니다.

IV. 수익증권의 매입·환매 및 분배

1. 매입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은 판매회사 영업시간 중 판매회사 창구에서 직접 매입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매입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1) 15시(오후 3시) 이전 자금을 납입한 경우
: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의 다음 영업일에 공고되는 당해 종류 기준가격 적용
- (2) 15시(오후 3시) 경과 후 자금을 납입한 경우
: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로부터 제 3영업일에 공고되는 당해 종류 기준가격 적용
- (3) 다만, 최초 설정 시에는 투자신탁 최초 설정일의 기준가격 적용

구분	1 영업일	2 영업일	3 영업일
15시(오후3시) 이전에 납입 시	자금 납입일 (매수청구일)	기준가격 적용일 수익증권 교부일	
15시(오후3시) 경과 후 납입 시	자금 납입일 (매수청구일)		기준가격 적용일 수익증권 교부일

※ 수익증권의 매입기준

- (1) 종류 A 수익증권 : 제한 없음
- (2) 종류 CE 수익증권
 - 판매회사의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가입한 자
- (3) 종류 C1 수익증권 : 제한 없음
- (4) 종류 C2 수익증권
 - 납입금액 50억 이상
- (5) 종류 C3 수익증권
 - 법에 의한 간접투자기구
 - 납입금액 100억원 이상 개인, 500억원 이상 법인 또는
 - 법인세법 시행령에 따른 기관투자가 및 국가재정법에 따른 기금

매입청구의 취소 또는 정정은 당일 15시(오후 3시) 이전까지만 가능 합니다.

다만, 15시(오후 3시) 경과 후 매입청구의 취소 또는 정정은 당일 17시 (오후 5시) 이전까지 만 가능합니다.

매입청구의 기준시점은 판매회사의 전산시스템에 의하여 거래전표에 표시된 시간으로 구분하여 처리합니다.

※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매입관련 추가적인 유의사항이 ‘제2부. 투자신탁의 상세 정보’의 ‘IV. 매입·환매 및 분배관련 유의사항’ 중 ‘1. 매입관련 유의사항 (19쪽)’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2. 환매

가. 환매방법 등

수익자는 판매회사의 영업점에서 환매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수익증권의 환매가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15시(오후 3시)시 이전 환매를 청구한 경우
 : 환매를 청구한 날부터 **제4영업일**의 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제8영업일**에 환매금액 지급

(2) 15시(오후 3시)경과 후 환매를 청구한 경우
 : 환매를 청구한 날부터 제5영업일의 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제9영업일에 환매금액 지급

구분	1 영업일	4 영업일	5 영업일	8 영업일	9영업일
15시(오후3시) 이전에 환매 신청 시	환매 청구일	기준가격 적용일		환매대금 지급일	
15시(오후3시) 경과 후 환매 신청 시	환매 청구일	-	기준가격 적용일		환매대금 지급일

환매청구의 취소 또는 정정은 당일 15시(오후 3시) 이전까지만 가능 합니다.

다만, 15시(오후 3시) 경과 후 환매청구의 취소 또는 정정은 당일 17시 (오후 5시) 이전 까지 만 가능합니다.

환매청구의 기준시점은 판매회사의 전산시스템에 의하여 거래전표에 표시된 시간으로 구분하여 처리합니다.

나. 환매수수료

수익증권을 환매하는 경우 판매회사는 환매를 청구한 수익자가 당해 종류 수익증권을 보유한 기간별로 환매수수료를 징구하여 환매대금 지급일의 익영업일까지 투자신탁 재산에 편입합니다.

이 때 환매수수료는 모든 종류의 수익증권에 부과하며 다음과 같습니다.

- (1) 30일 미만 환매 시 이익금의 70%
- (2) 30일 이상 90일 미만 환매 시 이익금의 30%

다. 환매금액

환매대금(공고된 기준가격에 수익증권 좌수를 곱한 금액 / 1000)에서 환매수수료 및 관련세금 등을 공제한 금액

※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환매 관련 추가적인 유의사항이 '제2부. 투자신탁의 상세 정보'의 'IV. 매입·환매 및 분배관련 유의사항' 중 '1. 환 매 관련 유의사항 (19~21쪽)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3. 이익 등의 분배

자산운용회사는 이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에 따라 발생한 이익금을 투자신탁 회계 기간 종료 시에 현금으로 수익자에게 분배합니다.

수익자는 수익자와 판매회사 간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신탁약관 제43조에 의한 이익분배금에서 세액을 공제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분배금 지급일의 기준가격으로 새로운 당해 종류 수익증권을 매수합니다.

※ 분배관련 추가적인 유의사항이 '제2부. 투자신탁의 상세정보'의 'IV. 매입·환매 및 분배관련 유의사항' 중 '3. 분배관련 유의사항(21쪽)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1. 투자전략 및 투자위험 등

1. 투자전략 이 투자신탁은 모자형 투자신탁의 자 투자신탁으로 중국 관련 주식 중 인프라(사회기반시설) 및 소비재 관련기업의 주식 등에 주로 투자하는 **CJ 차이나 주식형 모 투자신탁에 신탁재산의 100% 이하를 투자**합니다.

<참고>

모 투자신탁의 주요 투자전략 **■ CJ 차이나 인프라-컨슈머 주식형 모투자신탁**

가. 기본운영전략 **■ 주식에의 투자**

주식에의 투자는 주로 중국관련 주식 중 Infra(사회기반시설) 및 컨슈머(소비재) 관련 섹터에 중점 투자할 예정입니다.

중국관련 주식은 중국본토의 A주식, B주식 및 중국에 본사를 둔 기업이 홍콩에 상장되어있는 홍콩 H주식 및 중국의 국영기업이 홍콩에 상장되어 있는 홍콩 R(레드 칩)주식 및 기타 홍콩시장에 상장된 중국관련 기업의 주식에 모두 투자할 예정입니다.

인프라 관련주식은 도로, 철도, 항만, 발전소, 상하수도, 대중교통시설 등 사회기반시설과 관련된 자본재, 원자재, 설비투자, 운송, 에너지분야의 기업을 의미하며, 컨슈머 관련 주식은 자동차, 내구소비재, 의류, 호텔, 레저산업, 미디어, 소매 등의 경기관련소비재 및 음식료, 담배 등의 비 경기관련소비재를 모두 포함합니다.

■ 채권에의 투자

채권에는 국내 및 해외채권에 40%이하, 어음(A2-이상) 등에 40%이하로 투자하며 투자자의 환매요청에 원활한 대응을 위한 유동성 관리의 목적으로 운용할 예정입니다.

또한 해외투자자금의 일부를 투자대기자금의 성격으로 해외 채권 및 해외채권형 펀드 등에 투자할 수도 있습니다.

■ 기타 간접투자증권 및 장외파생상품에의 투자

중국 A주식에의 투자에 있어 적정 투자대상이 없거나 투자비율을 조절하기 위하여 중국 A주식에 주로 투자하는 해외간접투자증권에 직접 투자하거나 해외 간접투자증권 또는 중국 A시장의 개별주식의 성과와 연계된 장외파생상품에도 투자(신탁재산의 10% 이내, 장외파생상품의 투자로 인한 최대 손실규모는 장외파생상품 투자 금액 이내인 구조)할 예정입니다.

■ 환 헤지 전략

홍콩 및 미국 달러화와 한국 원화 간 환율변동위험을 최소화 시키기 위해 통화선물 등을 사용하여 환 위험을 제거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홍콩 및 미국 달러 이외의 개별국가의 통화는 헤지 전략을 수행하지 않을 예정이므로 개별국가의 환율변동 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나. 세부운용전략

■ 주식투자전략

- 장기적으로 업종평균 이상의 수익을 성장이 기대되는 주식에 투자
- 장기적인 분석 및 예측을 바탕으로 투자대상 종목을 선택
- 벤치마크(시장 수익률)를 추종하기 보다는 Total Return 추구
- 시가 총액별 종목별 비중과는 관련 없이 종목별 투자 매력정도에 따른 같은 가중치로 투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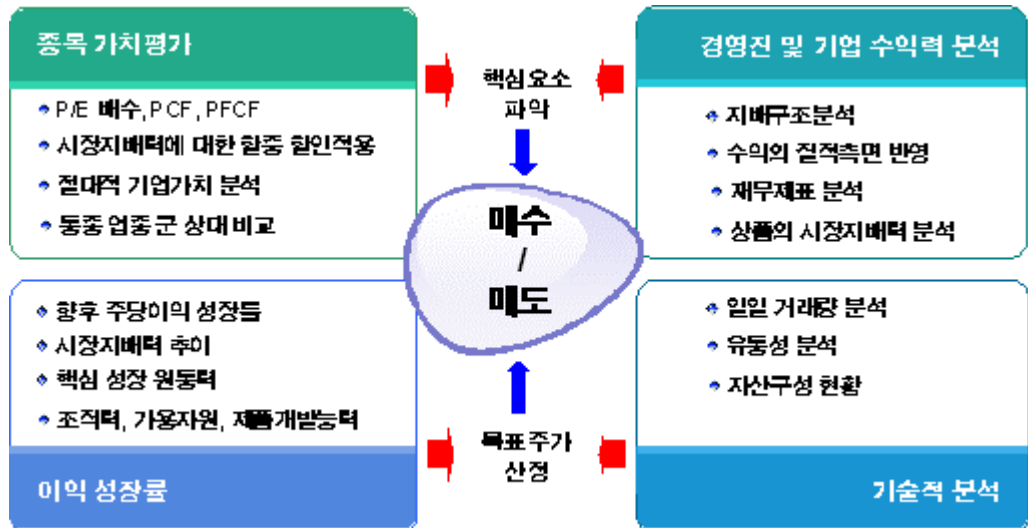
■ 섹터 배분전략

- 핵심 포트폴리오(70% 수준) : 인프라 관련업종 및 소비 관련업종
- 전략 포트폴리오(30% 수준) : 내수기반 우량기업군

■ 종목 선정 프로세스

- ▶ 강력한 리서치 네트워크
 - 기업탐방 중시 : 기업실질에 바탕으로 한 종목분석
 - 브로커와의 지역 네트워크 설립 : 외부리서치 역량 활용
 - 유기적 역할 분담 : 자회사를 통한 본토 “A” 주식 관련 운용정보 교류
 - 아시아 기반 네트워크 : 종목 상대평가로 종목선택능력 제고
- ▶ 계량분석(1차 분석) • 시스템화 된 계량분석으로 객관적 종목 Pool 구성
 - 계량평가 모델을 활용 핵심 종목 군 pool 구성
- ▶ 시장분석(2차 분석)
 - 산업분석을 바탕으로 한 업종 및 기업군 2차선별
 - 경영진 및 향후 성장성 분석

■ 종목 선정 및 Re-Balancing



2. 투자위험

이 투자신탁은 해외 주식형 母 투자신탁에 100% 이하 투자하므로 이 투자신탁은 해외 주식형 투자신탁이 부담하는 위험수준과 유사합니다.

<참고>

母 투자신탁의
주요 투자위험

(1) 시장위험

이 투자신탁은 중국관련 주식 등에 주로 투자하며 중국관련 주식 등은 국내 거시경제지표의 변화보다는 해외 특히 중국 금융시장의 주가, 환율, 금리 등의 거시경제지표의 변화에 더 민감하게 변동됩니다.

(2) 투자대상 국가위험

이 투자신탁의 성과는 중국관련 주식 등의 가격변동에 따라 결정되므로 투자 유가증권의 가치에 부정적으로 작용하는 관련 증권시장의 법령 및 규제 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노출될 수 있으며 중국과 같은 신흥시장의 경우 글로벌 시장 또는 선진국가의 시장에 투자하는 것에 비해 상대적으로 취약한 경제 구조, 낮은 투명성 등으로 더 큰 투자 위험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투자신탁은 중국관련 주식에만 투자하므로 다수의 여러 국가에 분산하여 투자하는 것에 비해 더 많은 위험을 부담하게 됩니다.

(3) 주가하락위험

이 투자신탁은 주식 고 편입상품으로 중국관련 주식의 주가하락(전체 주식 시장의 변동 또는 개별기업의 실적 변화 등으로 인한 개별 기업의 주가변동)에 따르는 위험을 부담합니다. 또한 이 투자신탁은 인프라 및 컨슈머 섹터에 집중 투자하므로 여러 섹터에 분산하여 투자하는 펀드에 비해 더 높은 위험을 부담합니다.

(4) 환율변동위험

이 투자신탁은 해외투자로 인한 환 위험에 대해 원화와 홍콩달러 및 미국 달러에 대해서만 통화선물 등을 통한 환 헤지를 수행합니다. 기타 다른 통화에 대하여는 환 헤지 전략을 수행하지 않을 예정이므로 다른 통화의 환율변동에 따라 투자신탁의 가치변동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5) 채권투자위험

투자적격등급 신용등급을 가진 채권에 투자할 예정이나, 투자적격등급의 채권 또한 신용risk가 존재하고 채권 금리의 변동에 따라 채권가격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자율이 하락하면 채권가격이 상승에 의한 자본이득이 발생하고 이자율이 상승하면 자본손실이 발생합니다.

(5) 유동성위험

증권시장규모 등을 감안할 때 회사가 거래량이 풍부하지 못한 종목에 투자할 경우 투자대상종목의 유동성 부족에 따른 환금성의 결여가 신탁재산 가치의 하락을 초래할 위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해외 유가증권에 투자하므로 환매기간이 다른 투자신탁보다 길게 소요됩니다. 또한 이 투자신탁은 중국의 A 주식 또는 A주식에 주로 투자하는 해외간접투자증권 등에 투자할 예정이며 중국 A 주식의 경우 외국인투자자의 의무보유기간 등 엄격한 제한으로 인해 A주식의 매도가 제한될 우려가 있어 다른 투자신탁보다 유동성이 제한될 위험이 더 큽니다.

(6) 파생상품투자위험

파생상품(선물, 옵션에의 투자)은 작은 증거금으로 거액의 결제가 가능한 지렛대 효과(레버리지 효과)로 인하여 기초자산에 직접 투자하는 경우에 비하여 높은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 투자신탁은 중국의 A주식에 주로 투자하는 해외 수익증권과 연계된 장외파생상품에 투자함에 따라 발생하는 장외파생상품의 거래에 따른 일반적인 위험(거래상대방의 부도위험, 계약내용의 변경위험 등)을 추가적으로 부담합니다.

(7) 예상 순자산가치 변동위험 · 이중가격 위험

시장의 여러 변동요인에 따라 환매청구시의 기준가격과 환매일의 기준가격이 동일하지 않아 환매청구일의 평가금액은 환매일의 출금액과는 다를 수가 있습니다.

(8) 환매연기 또는 제한위험

현저한 거래부진 등으로 투자신탁재산을 매각할 수 없거나 유가증권시장 등의 폐쇄·휴장 또는 거래정지 등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투자신탁재산을 매각할 수 없는 경우,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투자증권 등의 부도발생 등으로 인하여 투자신탁재산을 매각하여 환매에 응하는 것이 수익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투자신탁재산의 공정한 평가가 곤란하여 환매청구에 응하는 것이 수익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대량의 환매청구에 응하는 것이 수익자간의 형평성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환매가 연기될 수 있으며, 수익자 또는 질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자를 정하기 위하여 일정한 날을 정하여 수익자명부에 기재된 수익자 또는 질권자를 그 권리를 행사할 수익자 또는 질권자로 보도록 한 경우로서 이 일정한 날의 전일과 그 권리를 행사할 날까지의 사이에 환매청구를 한 경우와 법령 또는 법령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환매가 제한되는 경우에는 환매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특히 중국 A주식의 경우 외국인투자자에 대하여 매입주식의 의무 보유기간, 매도 규모 및 환전, 송금 등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어 상대적으로 환매연기 또는 제한 위험이 다른 투자신탁에 비해 높습니다.

※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 등에서 판매하는 경우에도 당해 투자신탁 수익증권은 예금과 달리 예금보험공사 등의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3. 투자대상

투자대상		투자한도(%)	주요 내용
1.	CJ 차이나 인프라-컨슈머 주식형 모 투자신탁	100% 이하	이 투자신탁의 모 투자신탁 중국관련 주식 60% 이상 투자 (단, 인프라 및 컨슈머 관련주식에 60% 이상 투자)
2.	단기대출 및 금융 기관에의 예치	10% 이하	30일 이내의 금융기관 간 단기자금거래에 의한 자금공여 및 만기1년 이내인 상품 수익증권의 환매를 원활하게 하고 투자 대기 자금의 활용을 위해 운용합니다.

단, 약관 제21조 및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수익자의 환매청구에 대응하기 위하여 자산운용회사가 환매대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모 투자신탁의 환매대금 지급 일정의 차이로 인하여 단기대출 및 금융기관의 예치의 비율이 일시적으로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상기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1의 기간 또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투자한도를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다음 제4호 및 제5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투자비율을 위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투자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1. 투자신탁 최초설정일부터 1월간
2. 투자신탁 회계기간종료일 이전 1월간
3. 투자신탁 계약기간 종료일 이전 1월간
4. 3영업일 동안 누적하여 추가설정 또는 해지청구가 각각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는 경우
5. 투자신탁 재산인 수익증권 등의 가격변동으로 투자비율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

<참고>

母 투자신탁의
주요 투자대상

투자대상	투자한도 (%)	주요 내용
중국관련 주식	60% 이상	증권거래법 제2조제1항제5호 및 제6호의 성질을 구비한 것으로서 외국통화로 표시되어 중국·홍콩에서 발행 또는 창설되거나 유통되는 주권 또는 신주인수권을 표시하는 증서, 또는 주된 사업을 중국에서 영위하거나 중국에 본사를 둔 기업이 발행한 주권 또는 신주인수권을 표시하는 증서(국제적으로 인정된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것 및 12개월 이내에 상장이 예정되어 있는 것에 한한다)
* 인프라 주식	단, 인프라 주식 및 컨슈머 주 식에 60% 이상	중국관련 주식 중 사회기반시설과 관련된 건설, 산업재, 원자재, 에너지, 유틸리티, 통신 등의 업종에 속한 주식
* 컨슈머 주식		중국관련 주식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업종에 속한 주식 가.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 가전, 가구 등 및 의류, 호텔, 레스토랑, 레저, 미디어, 소매 등의 경기관련소비재 나. 식품, 음료, 담배 등의 경기비관련소비재
채권	40% 이하	증권거래법 제2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특별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 사채권(신용평가등급이 A-이상이어야 하며 사모사채권 및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 계획에 따라 발행하는 사채를 제외한다.)
해외채권		외국정부 또는 외국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이나 증서 또는 법 제2조제7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외화증권으로서 위 제3 호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 것 단, 제3호에 적용되는 신용 평가등급 요건은 적용되지 아니하나, 사채권의 경우에는 2이상의 국제 신용평가기관으로부터 신용평가를 받은 것이어야 한다.
자산 유동화 증권	40% 이하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되는 사채, 주택저당채권유동화 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 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 및 법 제2조 제7호 다.항의 규정에 의한 외화증권으로서 위 성질을 가지고 있는 것
어음	40% 이하	법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이 발행, 매출 또는 중개한 어음, 채무증서 또는 증권 거래법시행령 제2조의3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어음으로서 신용등급이 A2- 이상인 것 및 법 제2조 제7호 다.항의 규정에 의한 외화증권으로서 위 성질을 가지고 있는 것
장내파생 상품	위탁 증거금의 15%이하	증권거래법에 의한 유가증권시장 또는 선물거래법에 의한 선물시장에서 거래되는 주가지수 선물, 주가지수옵션, 주식 옵션, CD금리선물, 통안증권 금리선물, 국채선물 및 국채선물 옵션, 국내 및 국제적으로 공인된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통화 선물 및 통화옵션
금리스왑		거래시점에서 교환하는 약정이자의 산출근거가 되는 채권 또는 채무증서의 총액이 투자신탁이 보유하는 채권 또는 채무증서 총액의 100% 이하

수익증권	신탁업법에 의하여 신탁회사가 발행한 수익증권, 법에 의하여 자산운용회사가 발행한 수익증권 및 투자회사가 발행한 주식 및 <u>외국에서 발행 또는 창설되거나 유통되는 것으로서 외국 통화로 표시된 것으로서</u> 자산총액의 5% 이하. <u>다만, 자산총액의 100분의 95 이상이 외국통화로 표시된 자산에 운용되는 외국간접투자증권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자산총액의 20%까지로 한다.</u>
환매조건부채권	환매조건부채권의 매도는 투자신탁이 보유하는 채권총액의 100분의 50 이하
투자증권의 대여	투자증권의 대여는 투자신탁이 보유하는 투자증권 총액의 <u>50% 이하</u>
투자증권의 차입	투자증권의 차입은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u>20% 이하</u> 로 한다
통화관련 장외파생 상품	법 제2조 제9호에 의거한 통화관련 장외파생상품 (환율변동으로 인한 투자신탁재산의 위험 방지만을 목적으로 투자할 수 있다)
해외간접 투자증권 연계장외 파생상품	10% 이하 법 제2조 제9호의 규정에 의거한 거래(이하 “”이라 한다)로서 다음 각 호의 손익구조를 만족하는 거래를 말한다. 1. 제1호의 중국관련주식 중 중국 상하이 또는 선전의 A 시장에 상장되어있는 개별 주식 또는 제8호의 수익증권 중 중국의 A주식에 주로 투자하는 해외 수익증권의 가치 변동에 연계되어 수익이 결정되는 장외파생상품 2. 장외파생상품의 투자로 인한 최대손실규모가 장외 파생상품 투자금액 이내인 구조를 갖는 장외파생상품
단기대출	30일 이내의 금융기관 간 단기자금거래에 의한 자금공여
금융기관예치	만기1년 이내인 상품에 한함
기타1	법 시행령 제108조의 규정에 의한 신탁회사 고유재산과의 거래
기타2	다음의 경우에는 약관 제 36조 1항 1호 내지 5호의 투자비율을 적용하지 아니함. 다만, 라. 및 마.의 경우에는 투자비율 적용 예외 기간을 15일 이내로 함 가. 투자신탁 최초설정일로부터 1개월간 나. 투자신탁 회계기간 종료일 이전 1개월간 다. 투자신탁 계약기간 종료일 이전 1개월간 라. 3영업일 동안 누적하여 추가설정 또는 해지청구가 각각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는 경우 마. 투자신탁 재산인 투자증권 등의 가격변동으로 36조 1항 1호 내지 5호의 규정을 위반하게 되는 경우

4. 투자제한

자산운용회사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다만, 법령 및 규정에서 예외적으로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1) 자산운용회사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법 시행령 제77조에서 정하는 자산운용회사의 이해관계인에게 단기대출로 운용하는 행위를 신탁회사에게 지시할 수 없다
- (2) 투자신탁재산으로 보유하고 있는 **수익증권 등 자산의 가격변동**, 투자신탁의 일부해지 등의 사유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한도를 초과 하게 된 경우에는 초과일부부터 3월 이내에 그 투자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참 고>
母 투자신탁의
주요 투자제한

- ① 자산운용회사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수탁회사에게 지시할 수 없다. 다만, 법령 및 규정에서 예외적으로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
1.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법 시행령 제77조에서 정하는 자산운용회사의 이해 관계인에게 단기대출로 운용하는 행위
 2.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동일종목의 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이 경우 동일회사가 발행한 투자증권 중 주식을 제외한 투자증권은 동일종목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목의 경우에는 각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10%를 초과하여 동일종목 투자증권에 투자할 수 있다.
 - 가. 국채증권, 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 및 정부가 원리금의 상환을 보증한 채권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까지 투자하는 경우
 - 나. 지방채증권,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이 발행한 채권 및 어음(법제2조제7호의 투자증권에 해당하는 어음에 한한다. 이하 이목에서 같다), 법 시행령 제6조제1호 내지 제6호 및 제8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이 발행한 채권 또는 채무증서 및 어음, 동조항의 금융기관이 보증한 채권(증권거래법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모집의 방법에 의하여 발행된 채권에 한한다) 또는 채무증서 및 어음, 주택저당채권 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에 의한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 또는 법 시행령 제6조제1호 내지 제6호 및 제8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이 지급 보증한 것에 한한다) 및 상장지수간접투자기구의 간접투자증권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30%까지 투자하는 경우
 - 다. 동일회사가 발행한 주식의 시가총액비중(매일의 당해 주식의 종가의 총액을 유가증권 시장에서 거래되는 모든 종목의 종가의 총액을 합한 금액으로 나눈 비율을 1월간 평균한 비율을 말한다)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당해 주식에 투자하는 경우. 이 경우 시가총액비중은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그 다음 1월간 적용한다.
 3.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으로 동일회사가 발행한 주식총수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4. 동일회사가 발행한 투자증권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상품 거래에 따르는 위험의 평가액이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는 행위
 5. 파생상품 거래에 따른 위험평가액[투자신탁의 설정일부터 매 1월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그 매 1월의 매일의 위험평가액을 산술 평균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매 1월이 되는 날 전에 이 투자신탁이 해지 되는 경우에는 그 해지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이하 ‘위험평가액’ 이라 한다]]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는 행위
 6. 파생상품 거래에 따른 위험평가액을 포함한 투자신탁재산 총 위험평가액이 이 투자신탁 자산 총액의 100%를 초과하는 행위
 7.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계열회사가 발행한 주식에 투자하는 행위. 다만, 계열회사가 발행한 전체주식의 시가총액비중의 합이 1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계열회사가 발행한 전체 주식가액이 시가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까지 투자할 수 있다.
 8. 투자신탁재산을 그 발행인이 파산하는 때에 다른 채무를 우선 변제하고 잔여재산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채무를 상환한다는 조건이 있는 후순위채권에 투자하는 행위

② 투자신탁재산으로 보유하고 있는 투자증권 등 자산의 가격변동, 투자신탁의 일부해지 등의 사유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제36조 제1항 제6호 내지 제11호 및 이 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7호의 규정에 의한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된 경우에는 초과일부터 3월 이내에 그 투자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부도 등으로 매각이 불가능한 투자증권은 매각이 가능한 시기까지 이를 그 투자한도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③ 투자신탁의 최초 설정일부터 1개월간은 제36조제1항 제8호 및 이 조 제1항 제2호 본문 및 제4호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II. 자산의 평가

• 자산의 평가

평가 기준일에 공고된 기준가격으로 평가합니다. 다만 상장된 간접투자증권은 한국증권선물거래소에서 거래된 최종시가로 산정됩니다.

<참 고>

• 투자신탁의 자산평가

대상자산	평가방법
장내파생상품	그 장내파생상품이 거래되는 유가증권시장 등이 발표하는 가격
장외파생상품	2 이상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한 가격
상장채권	평가기준일에 유가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가를 기준으로 2이상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한 가격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3월간 계속 매월 10일 이상 유가증권시장에서 시세가 형성된 채권에 한정
비상장채권	2 이상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한 가격 (위 상장채권 조건에 해당하지 않은 상장채권 포함)
해외상장주식 /채권	그 유가증권을 취득한 국가에 소재 하는 유가증권시장의 최종시가
해외 비상장 유가증권	2 이상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한 가격
기업어음 또는 금융기관이 발행한 채무증서	2 이상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을 기초로 한 가격
간접투자증권	평가기준일에 공고된 기준가격. 다만, 상장된 간접투자증권은 유가 증권시장 또는 코스닥 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가

• 평가 기준일에 출자전환주식 등 평가 기준일에 거래실적이 없어 공정한 가치의 산정이 곤란한 자산, 시장매각이 제한되거나 매각이 곤란한 자산은 영 제33조 제1항 및 영 제8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격을 기초로 하여 간접투자재산 평가위원회가 정하는 가격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 자산운용회사가 외화로 표시된 자산을 평가함에 있어 외화를 원화로 환산하는 환율은 평가일의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외국환중개회사에서 고시하는 최근 거래일의 매매기준율 또는 최종시가로 합니다. 이 경우 외국환중개회사가 매매기준율 또는 최종시가를 고시하기 전에 전자매체 등을 이용하여 미리 고시한 환율이 있는 경우에는 그 환율을 사용하여 평가할 수 있습니다.

III. 투자증권, 장내파생상품 거래 시 중개회사의 선정기준

구 분	중개회사의 선정기준
투자증권 거래	가. 주식 위탁매매 배정기간 단위로 기여도표에 의하여 위탁매매기관별 평가 및 배정비율을 산정하고 대표이사의 승인을 받은 후 시행 나. 채권 위탁매매기관의 재무건전성과 당사에 대한 기여도, Back-Office 관련 업무협조 정도를 평가대상으로 하여 위탁매매기관별 배정비율을 산정하고 대표이사의 승인을 받은 후 시행
장내파생상품 거래	가. 주식관련 장내파생상품 : 주식매매 기준과 동일 나. 채권관련 장내파생상품 위탁매매기관의 재무건전성과 당사에 대한 기여도, Back-Office 관련 업무협조 정도를 평가대상으로 하여 위탁매매기관별 배정비율을 산정하고 대표이사의 승인을 받은 후 시행

IV. 매입·환매 및 분배관련 유의사항

1. 매입관련 유의사항

- ▶ **매입 청구의 취소 또는 정정** **매입청구의 취소 또는 정정은 당일 15시(오후 3시) 이전까지만 가능 합니다.**
 다만, 15시(오후 3시) 경과 후 매입청구의 취소 또는 정정은 당일 17시 (오후 5시) 이전까지 만 가능합니다.
 이때 매입청구의 기준시점은 판매회사의 전산시스템에 의하여 거래전표에 표시된 시간으로 구분하여 처리합니다.

- ▶ **영업일** **이 투자신탁의 영업일이라 함은 판매회사의 영업일을 의미합니다.**

2. 환매관련 유의사항

- ▶ **환매방법** 수익자가 수익증권의 환매를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익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에 청구하여야 합니다. 다만, 판매회사가 해산·허가취소, 업무정지 등 법령에서 정하는 사유(이하 "해산 등"이라 한다)로 인하여 환매청구에 응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법 제62조 제2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산운용회사에 직접 청구할 수 있으며, 자산운용회사가 해산 등으로 인하여 환매에 응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법 제62조 제4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탁회사에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 ▶ **환매 청구의 취소 또는 정정** 간접투자증권(수익증권) 환매청구의 취소 또는 정정은 당일 오후 3시 이전까지만 가능합니다. 다만 오후 3시 경과 후 환매청구의 취소(정정)는 당일 오후 5시 이전까지 가능합니다.
 이때 환매청구의 취소 또는 정정 시간은 판매회사가 전산시스템에 의해 업무를 처리한 경우 거래전표에 표시된 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 **일부환매**

수익자는 보유한 수익증권 좌수 중 일부에 대하여 환매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환매제한**

자산운용회사는 다음의 경우 환매청구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① 수익자 또는 질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자를 정하기 위하여 일정한 날을 정하여 수익자명부에 기재된 수익자 또는 질권자를 그 권리를 행사할 수익자 또는 질권자로 보도록 한 경우로서 이 일정한 날의 6영업일 전일(15시 경과 후 환매청구시 7영업일 전일) 과 그 권리를 행사할 날까지의 사이에 환매청구를 한 경우
- ② 법령 또는 법령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환매가 제한되는 경우

▶ **환매연기**

-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환매일에 환매대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 자산운용회사는 수익증권의 환매를 연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자산운용회사는 지체 없이 환매연기 사유 및 수익자총회 개최 등 향후 처리 계획을 수익자 및 판매회사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 1. 투자신탁재산의 매각이 불가능하여 사실상 환매에 응할 수 없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사유
 - 가. 현저한 거래부진 등으로 투자신탁재산을 매각할 수 없는 경우
 - 나. 유가증권시장 등의 폐쇄·휴장 또는 거래정지 등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투자신탁재산을 매각할 수 없는 경우
 - 다.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 2. 수익자의 이익 또는 수익자간의 형평성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사유
 - 가. 투자증권 등의 부도발생 등으로 인하여 투자신탁재산을 매각하여 환매에 응하는 것이 수익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나. 투자신탁재산의 공정한 평가가 곤란하여 환매청구에 응하는 것이 수익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다. 대량의 환매청구에 응하는 것이 수익자간의 형평성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3. 수익자의 이익 또는 수익자간의 형평성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사유
 - 가. 투자증권 등의 부도발생 등으로 인하여 투자신탁재산을 매각하여 환매에 응하는 것이 수익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나. 투자신탁재산의 공정한 평가가 곤란하여 환매청구에 응하는 것이 수익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다. 대량의 환매청구에 응하는 것이 수익자간의 형평성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4. 제1호 또는 제2호에 준하는 사유로서 금융감독위원회가 환매연기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유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익증권의 환매를 연기한 경우 자산운용회사는 환매를 연기한 날부터 6주 이내에 수익자총회를 개최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 하여야 합니다.
 - 1. 환매를 재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환매금의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2. 환매연기를 계속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환매연기기간 및 환매재개 시 환매금의 지급방법
 - 3. 부분환매를 하는 경우에는 환매연기사유에 해당하는 자산의 처리방법
- ③ 환매연기기간 중에는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발행 및 판매를 할 수 없습니다.

- ④ 자산운용회사는 수익자총회에서 수익증권의 환매에 관한 사항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환매에 관하여 정한 사항의 실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계속하여 환매를 연기할 수 있습니다.
- ⑤ 수익자총회에서 환매에 관한 사항이 의결되거나 환매를 계속 연기하는 경우 자산운용회사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익자 및 판매회사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 1. 수익자총회에서 환매에 관한 사항을 의결한 경우
 - 가. 환매에 관하여 의결한 사항
 - 2. 환매연기를 계속하는 경우
 - 가. 환매를 연기하는 사유
 - 나. 환매를 연기하는 기간
 - 다. 환매를 재개하는 경우 환매금의 지급방법
- ⑥ 환매연기사유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해소되어 환매를 재개할 수 있을 경우 자산운용 회사는 환매가 연기된 수익자 및 판매회사에 대하여 환매한다는 뜻을 통지하고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환매금을 지급합니다.
 - 1. 환매연기 수익자총회일 이후에 환매를 재개하는 경우 : 수익자총회에서 정한 바에 따라 환매금 지급
 - 2. 환매연기 수익자총회의 개최 전에 환매를 재개하는 경우 : 자산운용회사가 정하는 바에 따라 환매금 지급. 이 경우 자산운용 회사는 환매연기 수익자총회를 개최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⑦ 제1항, 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는 서면 또는 컴퓨터통신으로 하여야 하며, 자산운용회사는 그 통지를 증권예탁결제원에 위탁할 수 있습니다.

3. 분배관련 유의사항

▶ 이익분배

자산운용회사는 이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에 따라 발생한 이익금을 투자신탁 회계기간 종료 시에 현금으로 수익자에게 분배하며 수익자는 수익자와 판매회사 간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이익분배금에서 세액을 공제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분배금 지급일의 기준가격으로 새로운 수익증권을 매수합니다.

▶ 상환금등의 지급

- ① 자산운용회사는 신탁계약기간이 종료되거나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 지체없이 수탁회사로 하여금 투자신탁원본의 상환금 및 이익금(이하 "상환금등" 이라 한다)을 판매회사를 경유하여 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 ② 판매회사는 수탁회사로부터 인도받은 상환금등을 지체없이 수익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 ③ 자산운용회사가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이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수익자 전원의 동의를 얻어 투자신탁 재산인 자산으로 수익자에게 상환금등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 ④ 자산운용회사는 투자신탁 재산인 투자증권 등의 매각지연 등의 사유로 인하여 상등의 지급이 곤란한 경우에는 증권예탁결제원을 통하여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 상환금등의 시효

- ① 이익분배금 또는 상환금등을 수익자가 그 지급개시일부터 5년간 지급을 청구하지 아니한 때에는 판매회사가 취득할 수 있습니다.
- ② 수탁회사가 이익분배금 또는 상환금등을 판매회사에게 인도한 후에는 판매회사가 수익자에 대하여 그 지급에 대한 책임을 부담합니다.

1. 자산운용회사

1. 회사의 개요

회사명	CJ자산운용주식회사
주소 및 연락처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5-15 CJ투자증권빌딩 11, 12층 T. 727-2700
회사연혁	1989. 10 제일투자신탁설립 1999. 2 제일투자신탁운용설립 1999. 4 제일투자신탁운용 영업개시 2004. 9 CJ자산운용으로 사명변경

2. 주요업무

자산운용회사는 간접투자신탁재산의 운용업무 및 이와 부수되는 업무를 수행합니다.

▶ 모 투자신탁의 해외자산운용업무의 위탁

자산운용회사는 자신의 비용으로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 투자신탁의 투자신탁 재산 중 해외자산에 관한 부문을 아래와 같이 위탁합니다.

1) 외국통화표시자산에 대한 운용업무의 위탁

①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시행령 제 164조 제1항 제 1호 가목에서 정한 바에 따라 자산운용회사는 외국에 소재 하는 자로써 그 국가로부터 운용 및 운용지시 업무수행에 필요한 허가를 받거나 그 국가에 등록 또는 신고 등을 한 사실을 금감위가 정한 바에 따라 보고한 자(이하 “해외위탁 자산운용 회사”라 한다.)에게 외국에서 발행 또는 창설되거나 유통되는 법 제2조제1호 각목의 자산 및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외국통화로 표시된 것 (이하“해외자산”이라 한다)의 운용 및 운용지시업무를 위탁할 수 있습니다.

② 해외위탁자산운용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외국통화로 표시된 해외자산에 대하여 투자일임의 방법에 의거, 운용 및 운용지시 등의 업무를 수행합니다.

③ 자산운용회사는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시행규칙 제 52조에 의거 다음 각 호의 권리를 행사하는 권한을 해외위탁자산운용회사에 위임한다.

1. 주식매수청구권의 행사
2. 공개매수의 응모
3. 유상증자의 청약

④ 해외위탁자산운용회사는 투자일임계약에 의하여 위탁 받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2) 해외위탁자산 운용회사에 관한 사항

① 신탁약관 시행일 현재 해외위탁자산운용회사는 인베스코 홍콩 리미티드 (INVESCO Hong Kong Limited)로 하며, 자산운용회사는 신탁약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외위탁자산운용회사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② 해외위탁자산운용회사가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간접투자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때에는 자산운용회사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 인베스코 홍콩 리미티드 (INVESCO Hong Kong Limited)에 관한 사항

▪ 국 적 : 홍콩

▪ 개 요 : Amvescap 社가 INVESCO Hong Kong Limited 지분 100%를 소유

- Amvescap 社의 개요

Amvescap은 29년전인 1978년도에 Southern Bank로 분리 설립된 INVESCO와 1976년 설립된 AIM 운용사의 1997년 합병으로 성립된 금융지주회사로 AIM, INVESCO, Atlantic Trust라는 브랜드로 시장에 알려져 있음. 현재 미국, 영국, 캐나다 주식시장에 상장 거래되고 있으며, MSCI WORLD INDEX, FTSE-100 INDEX 구성 종목임.

- 회사연혁 1976, AIM설립

1978, INVESCO설립

1992, CIGNA Funds Group 인수

1988 Britannia Arrow Asset Management 인수

1997 AIM, INVESCO합병 → AMVESCAP 지주회사 설립

1997, LGT Asset Management 인수

2001, National Asset Management 인수

2002, Whitehall Asset Management 인수

2003, Hypovereins bank의 부동산 업무 인수

2004, Merrill Lynch에 Retirement Inc. 매각

2006, Power Shares Capital Management

- 운용자산

Amvescap Group의 운용자산은 4406억 달러, Asia Pacific의 운용자산은 173억 달러

- 회사규모 임직원 : 5,500명

운용인력 : 550명

사무소 : 19개국 50개 사무소

▶ 의무 및 책임

- 자산운용회사의 선관의무

자산운용회사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간접투자자산을 관리하여야 하며, 간접투자자의 이익을 보호하여야 합니다.

- 자산운용회사의 책임

자산운용회사가 법령, 신탁약관 또는 투자설명서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간접투자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자산운용회사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관련되는 이사 또는 감사(감사위원회의 위원을 포함함)에게도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자산운용회사는 이들과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 연대책임

자산운용회사·수탁회사·판매회사·일반사무관리회사 및 채권평가회사는 이 법에 의하여 간접투자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

자산운용회사는 신탁약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외위탁자산운용회사를 변경할 수 있으며 해외위탁자산운용회사가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간접투자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때에는 자산운용 회사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3. 최근2사업연도의 요약재무내용
(단위:백만원)

요약 대차대조표			요약 손익계산서		
항목	2006.03.31	2007.03.31	항목	2005.4.1 ~ 2006.03.31	2006.4.1 ~ 2007.03.31
유동자산	36,533	47,384	영업수익	13,326	16,850
고정자산	4,661	10,396	영업비용	7,285	9,178
자산총계	41,194	57,780	영업이익	6,041	7,672
유동부채	680	15,081	영업외수익	45	0
고정부채	81	6,639	영업외비용	2	20,681
부채총계	761	21,720	경상이익	6,084	-13,009
자본금	34,070	34,070	특별손실	-	-8,635
자본총계	41,194	57,780	당기순이익	6,084	-4,373

4. 운용자산 규모
(2007.7.31)
(단위:억좌)

구분	MMF	채권형	주식형	혼합형	파생	재간접	부동산	기타	합계
수탁고	13,199	9,716	18,934	14,754	15,109	6,766	1,950	1,474	81,905

5.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성명	나이	직위	운용현황		주요운용경력 및 이력	비고
			운용중인 다른 간접투자기구 수	다른운용자산 규모		
진성남	43 세	팀장	10 개	16,144 억	부산대학교 대학원 경영학과 현 CJ자산운용 글로벌 운용팀장 제일투자신탁 국제부	팀운용

※ 이 투자신탁의 운용은 글로벌운용팀에서 운용하며 상기인은 이 투자신탁의 책임운용전문인력(팀장)입니다.

II. 판매회사

1. 회사의 개요

◆ CJ투자증권

주소	부산시 동래구 온천1동 153-10
전화번호	1588-7171
홈페이지	www.cjcyber.co.kr
회사연혁	1989. 10. 30 설립

2. 주요업무

▶ 업무 범위

- 수익증권 판매업무(수익증권의 모집 및 매출업무)
- 수익증권 환매업무
- 수익증권 교부업무
- 이익분배금 및 상환금 지급업무
- 각종 장부·서류등의 비치, 수익자 앞 제공 및 공고 업무
- 기타 법령 및 신탁약관에서 규정한 사항

▶ 의무 및 책임

- 신탁약관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신탁을 해지할 때 판매회사는 투자신탁의 해지사유, 해지일자, 상환금 등의 지급방법, 기타 주요 사항을 수익자에게 개별 통지하거나 신탁약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합니다.
- 수탁회사가 이익분배금 또는 상환금 등을 판매회사에게 인도한 후에는 판매회사가 수익자에 대하여 그 지급에 대한 책임을 부담합니다.
- 판매회사는 수탁회사로부터 인도 받은 이익분배금 또는 상환금 등을 지체 없이 수익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투자신탁계약기간종료일 현재 투자신탁재산인 유가증권 등의 매각지연 등의 사유로 인하여 상환금 등의 지급이 곤란한 경우에는 신탁약관 제22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그 사유가 해소된 이후에 지급할 수 있습니다.
- 자산운용회사, 수탁회사, 판매회사 등이 법에 의하여 수익자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

<판매행위 준칙 등>

① 판매회사 및 판매 회사에서 판매업무를 담당하는 임·직원은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 가. 투자원금의 보장 등 수익을 보장하는 권유행위
- 나. 투자자로부터 판매에 따른 대가를 수수하는 행위(판매와 직접 관련된 수수료는 제외)
- 다. 판매업무와 관련하여 취득한 정보를 자신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는 행위
- 라. 허위표시 또는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오해를 유발할 수 있는 표시행위
- 마. 그 밖에 투자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법시행령이 정하는 다음의 행위
 - 투자자에게 사실에 근거하지 아니한 판단자료 또는 출처를 제시하지 아니한 예측자료를 제공하는 행위
 - 간접투자증권의 가치에 중대한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미리 알고 있으면서 이를 투자자에게 알리지 아니하고 판매하는 행위
 - 투자자에게 실적배당 및 원본의 손실가능성 등 간접투자의 특성과 투자위험에 관한 신탁약관 또는 투자회사의 정관 및 투자설명서의 주요 내용을 충분하고 정확하게 알리지 아니하는 행위
 - 간접투자증권의 판매와 관련하여 허위의 사실, 그 밖에 근거없는 소문을 퍼뜨리는 행위
 - 투자자의 투자에 대한 인식, 투자목적, 재정 상태에 비추어 투자위험이 매우 큰 간접투자 증권을 적극적으로 권유하는 행위
 - 판매업무를 판매회사의 임·직원이 아닌 자에게 위탁하는 행위
 - 판매회사가 금전의 대여업무를 영위하는 경우에 금전의 대여를 조건으로 간접투자증권의 취득을 권유하는 행위
 - 법 제57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을 마치지 아니한 자로 하여금 간접투자증권을 판매하게 하거나 간접투자증권의 취득을 권유하게 하는 행위
 - 판매회사의 고유재산으로 간접투자기구 또는 간접투자자에게 이익을 보전(간접적인 방법으로 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행위

- 판매업무를 영위하는 직원이 수탁회사·자산보관회사·일반사무관리 회사의 업무 또는 고유재산의 운용업무를 겸직하게 하는 행위
- ② 판매회사는 제1항 각호의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포함하여 판매업무를 담당하는 임·직원이 준수하여야 할 구체적인 판매행위준칙(이하 "판매행위준칙"이라 한다)을 제정하여 금융감독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판매행위준칙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습니다.
- ③ 판매회사는 자기가 판매하는 간접투자증권의 간접투자재산에 관한 정보를 고유 재산 또는 자기가 판매하는 다른 간접투자증권의 판매를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 ④ 자산운용회사는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판매회사를 통하여 간접투자증권을 판매함으로써 취득하게 된 간접투자자에 관한 정보를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간접투자증권의 판매에 이용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 ⑤ 판매회사의 판매업무를 담당하는 임·직원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판매업무에 관한 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 ⑥ 자산운용협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판매행위 준칙과 관련하여 판매회사가 공통으로 사용할 수 있는 표준판매행위준칙을 제정할 수 있습니다.

III. 수탁회사

1. 회사의 개요

회 사 명	KB국민은행
주 소	서울시 중구 남대문로 2가 9-1
연 락 처	1588-9999
설 립 일	1963. 2 . 1(구 국민은행) 2001. 11. 1(국민·주택은행 합병)

2. 주요업무

▶ 업무 범위

- 투자신탁재산의 보관 및 관리
- 자산운용회사의 투자신탁재산 운용지시에 따른 자산의 취득 및 처분의 이행
- 자산운용회사의 투자신탁재산 운용지시에 따른 수익증권의 환매대금 및 이익금의 지급
- 자산운용회사의 투자신탁재산 운용지시 등에 대한 감시
- 간접투자재산에서 발생하는 이자·배당·수익금·임대료 등의 수령
- 무상으로 발행되는 신주의 수령
- 투자증권의 상환금의 수입
- 여유자금 운용이자의 수입
- 금융감독위원회가 인정하여 고시하는 업무

▶ 의무 및 책임

- 수탁회사는 투자설명서가 법령 또는 신탁약관에 부합하는지의 여부, 투자신탁 재산의 평가의 공정성 또는 기준가격산출의 적정성 등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 수탁회사는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에 관한 자산운용회사의 지시가 법령, 신탁약관 또는 투자설명서에 위반되는 경우에는 자산운용회사에 대하여 그 지시의 철회·변경 또는 시정을 요구하여야 합니다.
- 수탁회사는 투자신탁의 회계기간 종료 후 2월 이내에 법 제123조에서 규정한 수탁회사보고서를 수익자에게 제공하여야 합니다. 수탁회사보고서를 제공하는 경우 판매회사를 통하여 서면으로 우송하여야 합니다. 다만, 관련 법령 등에서 달리 정한 경우는 그 방법을 따를 수 있습니다.
- 자산운용회사, 수탁회사, 판매회사 등이 법에 의하여 수익자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연대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집니다.

IV. 일반사무관리회사

1. 회사의 개요

회 사 명	(주)에이브레인
주 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3-2
연 락 처	02) 2014-2041
설 립 일	1999. 11. 3.

2. 주요업무

▶ 업무 범위

- 기준가격의 산정업무
- 기준가격의 통보업무

▶ 의무 및 책임

일반사무관리회사는 이 투자신탁의 기준가격을 매일 산정하여 자산운용회사에 통보하여야 하며, 자산운용회사는 산정된 기준가격을 매일 공고·게시하여야 합니다.

- 투자회사의 운영에 관한 업무
- 투자회사의 주식의 발행 및 명의개서
- 법 제9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받은 업무
- 법령 또는 정관에 의한 통지 및 공고
-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의 소집 및 운영에 관한 사무

V. 채권평가회사

1. 회사의 개요

한국채권평가	KIS 채권평가	NICE 채권평가
서울 종로구 세종로 211 광화문빌딩 9층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23-7 유화증권빌딩 9층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5번지 한섬여의도빌딩
- 설립일 : 2000. 5. 29	- 설립일 : 2000. 6. 20	- 설립일 : 2000. 6. 15
- 등록일 : 2000. 7. 1	- 등록일 : 2000. 6. 30	- 등록일 : 2000. 6. 15
- 자본금 : 50 억원	- 자본금 : 30 억원	- 자본금 : 47.5 억원

2. 주요업무

간접투자재산에 속하는 채권 등 투자증권 및 파생상품의 가격을 평가하고 이를 간접투자기구에게 제공하는 것을 주요업무로 합니다.

1. 수익자의 권리

1. 수익자총회 및 의결권

- ▶ **구성과 권한**
 - (1) 이 투자신탁에는 전체 수익자로 구성되는 수익자총회를 둡니다.
 - (2) 수익자총회는 법령 및 모투자신탁에서 정한 사항에 한하여 의결할 수 있습니다.
 - (3)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수익자총회의 의결을 요하는 경우로서 특정 종류의 수익증권의 수익자에게 대하여 만 이해관계가 있는 때에는 당해 종류의 수익자로 구성되는 수익자총회를 개최할 수 있습니다.

- ▶ **의결사항**

수익자는 수익자총회에서 다음의 사항에 관하여 의결할 수 있습니다.

 - (1) 투자신탁보수 또는 수수료 인상, 수탁회사 변경, 신탁기간 변경 등 신탁약관 변경에 관한 사항
 - (2) 수익증권 환매의 연기에 관한 사항
 - (3) 투자신탁의 해지에 관한 사항
 - (4) 투자신탁의 합병에 관한 사항
 - (5) 모투자신탁의 수익자총회가 개최되고, 모투자신탁의 수익자총회의 목적이 이 투자신탁의 수익자의 이해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이 투자신탁재산으로 보유하는 모투자신탁 수익증권의 의결권을 행사함에 있어서는, 이 투자신탁의 수익자가 의결권을 행사한 내용에 비례하여 자산운용회사가 행사합니다.

- ▶ **의결권**

의결권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1) 의결권은 1좌마다 1개로 합니다.
 - (2) 수익자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그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 그 대리인은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을 수익자총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수익자총회의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 (3) 당 해 투자신탁재산으로 보유하는 모투자신탁 수익증권의 의결권을 행사함에 있어서는, 당해 투자신탁의 수익자가 의결권을 행사한 내용에 비례하여 자산운용회사가 행사합니다.

- ▶ **의결방법**

수익자총회는 다음에 정하는 바에 따라 총회 의안을 결의하게 됩니다.

 - (1) 발행된 수익증권총좌수의 과반수를 보유하는 수익자의 출석으로 성립되고,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과 발행된 수익증권 총수의 3분의 1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합니다.
 - (2) 수익자는 수익자총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서면으로 의결권을 행사하실 수익자는 자산운용사가 우편 또는 전자메일에 의하여 교부한 서면에 의결권행사의 내용을 기재하여 수익자총회의 회일 전일까지 자산운용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서면에 의하여 행사한 의결권의 수도 수익자총회에 출석하여 행사한 의결권의 수에 산입합니다.) 자산운용회사는 자산운용법 제7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익자로부터 제출된 의결권행사에 관한 서면을 수익자총회 일부터 6월간 본점에 비치하여야 합니다.

**▶ 소집 주체 및
통지** (1) 수익자총회는 자산운용회사의 본점소재지 또는 이에 인접한 지역에서 개최되며, 자산운용회사가 수익자총회를 소집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탁회사 또는 수익증권총좌수의 5% 이상을 보유한 수익자가 수익자총회의 목적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여 수익자총회의 소집을 자산운용회사에 요청하는 경우 자산운용회사는 1월 이내에 수익자총회를 소집하여야 합니다.

(2) 자산운용회사가 수익자총회를 소집할 경우에는 수익자총회일을 정하여 2주간 전에 각 수익자에 대하여 회의의 목적사항을 기재한 통지서를 서면 또는 컴퓨터 통신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 연기수익자
총회** 자산운용회사는 수익자총회의 회의개시 예정시각에서 1시간이 경과할 때까지 출석한 수익증권총좌수가 발행된 수익증권총좌수의 과반수에 미달하는 경우 다음과 같이 수익자총회를 연기할 수 있습니다.

(1) 수익자총회가 연기된 경우 자산운용회사는 그 날부터 2주 이내에 연기된 수익자총회(이하 “연기수익자총회”라 합니다)를 소집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연기수익자총회일 1주 전까지 연기수익자총회의 소집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2) 연기수익자총회에서는 회의개시 예정시각에서 1시간이 경과할 때까지 출석한 수익자의 수익증권총좌수가 발행된 수익증권총좌수의 과반수에 미달하는 때에는 출석한 수익자의 수익증권총좌수로서 수익자총회가 성립된 것으로 봅니다. 이 경우 수익자총회의 의결에 관하여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합니다.

2. 잔여재산분배 이 투자신탁의 수익자는 투자신탁계약기간의 종료 또는 투자신탁의 해지에 따라 발생하는 투자신탁원본의 상환금 및 이익분배금(이하 “상환금 등”이라 합니다)에 대하여 그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수탁회사는 투자신탁계약기간의 종료 및 투자신탁 해지에 따른 상환금 등을 자산운용회사의 지시에 따라 지체 없이 판매회사에게 인도합니다.
수탁회사가 상환금 등을 판매회사에게 인도한 후에는 판매회사가 수익자에 대하여 그 지급에 대한 책임을 부담합니다.

판매회사는 수탁회사로부터 인도 받은 상환금 등을 지체 없이 수익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투자신탁계약기간종료일 현재 투자신탁재산인 유가증권 등의 매각지연 등의 사유로 인하여 상환금 등의 지급이 곤란한 경우에는 신탁약관 제22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그 사유가 해소된 이후에 지급할 수 있습니다.

수익자가 상환금 등을 지급 받고자 할 때에는 판매회사에게 수익증권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장부·서류
열람 및
등·초본 교부
청구권** 수익자는 자산운용회사 또는 판매회사에 대하여 영업시간 내에 당해 수익자에 관련된 투자신탁재산에 관한 장부 서류의 열람이나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으며, 자산운용회사 또는 판매회사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절하지 못합니다. 수익자가 열람이나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는 장부·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1) 간접투자재산명세서
- (2) 간접투자증권기준가격대장
- (3) 재무제표 및 그 부속명세서
- (4) 자산매매거래내역서

4. 손해배상책임 자산운용회사가 법령, 약관 또는 투자설명서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수익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자산운용회사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관련되는 이사 또는 감사(감사위원회 위원을 포함합니다)에게도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이들과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자산운용회사, 수탁회사, 판매회사 등이 법에 의하여 수익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부담하는 경우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

5. 재판관할 자산운용회사, 수탁회사 또는 판매회사가 이 투자신탁계약에 관하여 소송을 제기한 때에는 소송을 제기하는 자의 본점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수익자가 소송을 제기하는 때에는 수익자의 선택에 따라 수익자의 주소지 또는 수익자가 거래하는 자산운용회사 또는 판매회사의 영업점포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익자가 외국환거래법 제3조제1항제13호의 규정에 의한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수익자가 거래하는 자산운용회사 또는 판매회사의 영업점포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6. 기타 수익자의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 이 상품의 신탁약관 등 상품에 대한 추가정보를 원하시는 고객은 이 상품의 자산운용회사 또는 판매회사에 언제든지 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상품의 기준가 변동 등 운용실적에 관해서는 이 상품의 자산운용회사 또는 판매회사에 언제든지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상품의 투자설명서 및 기준가변동등은 자산운용협회에서 열람, 복사하거나, 자산운용협회 인터넷(www.amak.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II. 공시

1. 정기공시 및 보고서

▶ 영업보고서 자산운용회사는 간접투자재산에 관한 영업보고서를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서류로 구분하여 작성하고, 매 분기 종료 후 20일까지 이를 금융감독위원회 및 자산운용협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1) 투자신탁의 설정현황 또는 투자회사의 자본변동상황
- (2) 투자신탁재산의 운용현황과 수익증권의 기준가격표
- (3) 시행령 제8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의결권공시대상법인에 대한 의결권의 행사여부 및 그 내용(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포함합니다)이 기재된 서류

▶ 감사보고서 회계감사인은 간접투자재산에 대한 회계감사를 종료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계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투자신탁의 자산운용회사에게 지체 없이 제출하여야 하며, 회계감사보고서를 제출 받은 자산운용회사는 금융감독위원회

및 자산운용협회와 그 간접투자기구의 판매회사, 수탁회사 또는 자산보관회사에 이를 지체 없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 (1) 대차대조표
- (2) 손익계산서
- (3) 기준가격계산서
- (4) 이해관계인과의 거래내역

▶ **자산운용
보고서**

회계감사인의 회계감사는 비용문제 등을 포함한 회계처리가 당해 종류별 수익증권과 이 투자신탁의 전체 수익증권의 이익을 합리적으로 반영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자산운용회사는 자산운용보고서를 작성하여 수탁회사 또는 자산보관회사의 확인을 받아 3월에 1회 이상 당해 간접투자기구의 간접투자자에게 제공하여야 합니다. 다만, 보유한 수익증권의 평가금액이 10만원 이하인 수익자에게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자산운용회사가 법 제12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간접투자자에게 자산운용보고서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판매회사를 통하여 우송하여야 합니다. 다만, 간접투자자가 전자우편을 통하여 자산운용보고서를 수령한다는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는 전자우편에 의하여 제공할 수 있습니다.

▶ **수탁회사
보고서**

수탁회사는 투자신탁의 회계기간 종료 후 2월 이내에 법 제123조에서 규정한 수탁회사보고서를 수익자에게 제공하여야 합니다. 다만, 보유한 수익증권의 평가금액이 10만원 이하인 수익자에게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수탁회사가 수탁회사보고서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판매회사를 통하여 서면으로 우송하여야 합니다. 다만, 수익자가 전자우편을 통하여 수령한다는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는 전자우편에 의하여 제공할 수 있습니다.

▶ **정기공시
확인장소**

정기공시사항은 자산운용협회 홈페이지(<http://www.amak.or.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모투자신탁의 경우 자산운용보고서와 수탁회사보고서가 작성되지 아니하며 자투자신탁의 자산운용보고서 및 수탁회사보고서가 모투자신탁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2. 수시공시

▶ **신탁약관의
변경**

신탁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항의 변경은 수익자총회의 의결에 의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자산운용회사는 수익자총회의 소집통지를 증권예탁결제원에 위탁하여야 합니다.

- (1) 자산운용회사, 수탁회사 등이 받는 신탁보수 또는 그 밖의 수수료의 인상
- (2) 수탁회사의 변경
- (3) 투자신탁계약기간의 변경
- (4) 투자신탁종류의 변경
- (5) 자산운용회사의 영업양도
- (6) 환매금지투자신탁이 아닌 투자신탁의 환매금지투자신탁으로의 변경

자산운용회사는 신탁약관을 변경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아래의 방법으로 공시하여야 합니다.

- ① 수익자총회의 의결에 의하여 신탁약관을 변경한 경우 : 증권예탁결제원을 통한 모든 수익자에의 통지
- ② 수익자총회의 의결에 의하지 않고 신탁약관을 변경한 경우 : 약관 제5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일간신문 및 컴퓨터통신을 통한 1회 이상 공고

위의 내용에도 불구하고 신탁약관의 단순한 자구수정 등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법령 또는 금융감독원장의 명령에 따라 신탁약관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자산운용회사 및 판매회사의 영업점포 내에 1월 이상 게시하여야 합니다.

▶ 투자신탁의
의결권행사

자산운용회사는 간접투자 재산인 주식의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의결권행사내용 등을 공시하여야 합니다.

- (1) 합병, 영업의 양도·양수, 임원의 임면, 정관변경 등 경영권변경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 의결권의 구체적인 행사내용
- (2) 의결권공시대상법인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 의결권의 구체적인 행사내용
- (3) 의결권공시대상법인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경우 :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구체적인 사유

의결권행사에 관한 공시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합니다.

- (1) 의결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증권거래법에 의한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인 경우에는 주주총회일 5일전까지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을 통하여 의결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내용을 공시할 것
- (2) 의결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증권거래법에 의한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시행령 제101조 각 호의 방법에 따라 공시하여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할 것

자산운용회사는 주주총회 목적사항의 구체적 내용이 주주총회일 5일 전까지 확정되지 아니하여 주주총회일 5일 전까지 시행령 제10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시를 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주주총회일 전까지 그 뜻을 공시하고, 주주총회일부터 5일 이내에 상기의 공시방법에 따라 그 주주총회에서 행사한 의결권의 내용을 공시하여야 합니다.

투자설명서 교부 및 주요내용 설명 확인서

투자신탁 명칭 : _____

판 매 일 : _____

투자자 확인 사항

○ 투자자께서는 투자설명서를 제공받고 그 주요내용에 대한 설명을 들으신 후 아래의 내용을 밑줄 친 곳에 똑같이 자필로 기재하고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시기 바랍니다.

* 투자설명서를 제공받고 그 주요내용(환율변동 위험 포함)을 설명 들었음.

(투자설명서를)_____ (그 주요내용(환율변동 위험 포함)을)_____.

년 월 일

성명 _____ 서명 또는 (인)